

#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



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,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,  
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

고용노동부 누리집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▶ 정책자료 ▶ 안심일터  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▶ 안전보건자료실

중대재해처벌법이란? -----	4
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-----	6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-----	8
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 ---	15
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-----	16
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-----	17
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, 연락처 -----	18



# 중대재해처벌법이란?

(중대산업재해 부문)

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.
-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중대산업재해란?

-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.

⚠️ 산업재해가 아니라면?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!

- ✓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- ✓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- ✓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\*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

\* 급성중독, 독성간염, 혈액전파성질병, 산소결핍증, 열사병 등 24개 질병

##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?

-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

⚠️ '사업 또는 사업장'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, 기관,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.

◆ 다만,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)은 2024.1.27.부터 적용

##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?



책임주체

법인 또는 기관의  
경영책임자

-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-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·보건 관련 조직, 인력,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
- ⚠️ 안전·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·공공기관의 장

개인사업주

-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

보호대상

종사자

- 근로자
-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-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·노무 제공자

#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 
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-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-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
- 3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 
명한 사항의 이행
- 4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



## 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


###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?

기업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·이행  
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.



### 핵심 point

-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‘유해·위험요인’을 찾아냅니다.
  - ☞ 기업의 재해이력,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,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 
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.
- 둘 발굴된 유해·위험요인은 안전·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 
조직·인력·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.
- 셋 기업·기관의 규모, 유해·위험요인,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 
업무특성과 기술,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.

#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



## ①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

-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,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립니다.

## ②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

-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.

**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**

기업·기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서

- ✓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
- ✓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



##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

☞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·개선是最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- 유해·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·대체·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(반기 1회 이상)하며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-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(SOP: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)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##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·시설·장비를 구비하고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

-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·위험요인의 제거·대체·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,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###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합니다.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합니다.

### ⑥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

- ▶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.
-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.

### 알아봅시다

- ✓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.
- ✓ 「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」를 참조하세요('22.1월 시행)
  - 일반업종은 최소 585시간, 재해위험 높은 업종은 최소 720시간
  - 상시근로자 수 100~200명은 100시간 추가, 200~300명은 200시간 추가

###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

- 유해·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유해·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▶ 온라인 시스템, 건의함,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.
-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
###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

#### 작성내용

- ✓ 작업 중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
- ✓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
- ✓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



⑨ 도급, 용역,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

-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.

기준·절차

- ✓ 수급인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
- ✓ 수급인 등의 안전·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
- ✓ 건설업·조선업은 안전·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/ 건조기간


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이행에 관한 조치

-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·위험요인의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합니다.
- ☞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.

3.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·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.  
예)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종지 등 시정조치
-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.

#### 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,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.
- 점검결과,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·예산의 추가편성·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- 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안전·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
####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은?

산업안전보건법, 폐기물관리법,  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, 항공안전법,  
광산안전법, 선원법, 연구실안전법 등

## 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

사업주나 법인·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·운영·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#### 여기서 잠깐!

####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?

사업주가 해당 장소, 시설·설비 등에 소유권,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·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·위험요인을 인지·파악하여 유해·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



#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



## 처벌

###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

개인사업주 또는  
경영책임자

▶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
법인 또는 기관

▶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

###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

개인사업주 또는  
경영책임자

▶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법인 또는 기관

▶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

\*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, 5년 내 재범 시 형의 1/2까지 가중

## 손해배상

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,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**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**을 집니다.

#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

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(20시간)을 이수해야 합니다.

◆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 주요내용

- ✓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·보건에 관한 경영방안
- ✓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

## 교육진행

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(중대산업 재해 발생 기관·법인의 경영책임자)에게 별도 통보

- ◆ 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 
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





###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, 연락처

구분	위치	연락처	관할지역
서울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서울시	02-2250-5897	서울시
중부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인천시	032-460-4428	인천시·부천시·김포시·의정부시· 구리시·남양주시·양주시·포천시· 연천군·고양시·파주시·강원도
경기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경기도 수원시	031-259-0249	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·성남시· 하남시·이천시·광주시·여주시· 양평군·광명시·안양시·과천시· 의왕시·군포시·안산시·시흥시· 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
부산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부산시	051-850-6483	부산시·울산시·경상남도
대구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대구시	053-667-6388	대구시·경상북도
광주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광주시	062-975-6349	광주시·전라남도·전라북도· 제주특별자치도
대전고용노동청 (광역중대재해 관리과)	대전시	042-480-6358	대전시·충청남도·충청북도· 세종시



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,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,  
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

- ◆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▶ 정책자료 ▶ 안심일터
- ◆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(www.kosha.or.kr) ▶ 안전보건자료실

발행일 2021년 12월  
발행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
디자인·제작 초이스컴(주) TEL. 070-4245-9599



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,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,  
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

고용노동부 누리집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▶ 정책자료 ▶ 안심일터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([www.kosha.or.kr](http://www.kosha.or.kr)) ▶ 안전보건자료실